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8

환 경 부

1. 개정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 공장 증설로 부지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공장증설 허용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의 경우 세분화되기 전까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청정지역내에서 공장증설로 부지면적합계가 5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2 비고3)

나.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노선의 지정·인정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하고자 함(안 별표 2)

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백두대산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5,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함(안 별표2)

대통령령 제 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호 구분란의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5)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에 대한 도로노선의 지정·인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한다)	지정·인정 전

별표 2제2호 구분란의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적용지역	(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백두대산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별표 2제2호 구분란의 자를 아로 개정한다.

별표 2제2호비고란의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2호가목의 지역중 관리지역의 경우 세분화되기 전까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의한 청정지역내에서 공장증설로 부지면적합계가 5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한다.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
(제7조제1항관련)

1. 행정계획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1)~(4) 생략 <신 설>	(좌동) (5)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에 대한 도로노선의 지정·인정(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한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좌동)

2. 개발계획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가.~아 (생략)	(생략)	(좌동)
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적용지역	<신 설>	(1)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백두대산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 그 밖의 개발사업	(생략)	(좌동)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2 (생략)	(생략)	(좌동)
3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호가목의 지역중 관리지역의 경우 세분화되기 전까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의한 청정지역내에서 공장증설로 부지면적합계가 5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한다.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좌동)

※담당:국토환경보전과 김영우사무관(☎2110-6696)